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7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부가가치세 면세	2
가. 개요	2
나.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임광현의원안, 황정아의원안)	7

I. 개요

1.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5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황정아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8. 5.
- (3) 회 부 일 : 2024. 8.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부가가치세 면세

가. 개요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¹⁾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수돗물, 여성용 생리용품,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등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반적인 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²⁾는 서민생활의 지원 및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익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라. (생략)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면서 일몰기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나. (생략)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나. (생략)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나. (생략)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외국에서 공급되는 용역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³⁾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⁴⁾에서 방산물자, 군납용 석유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

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와 영세율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되 면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는 이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음(이론상 ‘부분면세’).

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부가

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연원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치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와는 달리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됨(이론상 ‘완전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제도]

구분	영세율	면세
기본원리	일정한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 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함 ② 매입세액 전액 환급	일정한 과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① 거래징수 없음 ② 매입세액 환급되지 않음
성 격	완전면세	부분면세
취 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수출 등에 적용	기초생활품 등에 적용
사업자 협력의무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종 협력의무 존재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음.

자료: 「세법개론(2024)」, 임상엽·정정운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 예시]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100+10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120+12$ 매출세액 $120 \times 10\% = 12$ 매입세액 $\frac{(10)}{2}$ $\downarrow$ 납부	$100+10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120+0$ 매출세액 $120 \times 0\% = 0$ 매입세액 $\frac{(10)}{(10)}$ $\downarrow$ 환급	$100+10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130^{*}+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downarrow$ 환급 ×

※ $120+10=130$, 면세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0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자료: 「세법 워크북(2024)」, 이철재·정우승·유은중

나.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임광현의원안,
황정아의원안)

현행	임광현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26조제1항)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 교육용역 등 <u><신설></u>	☐ 면세대상에 영유아용품 추가 ○ (현행과 같음) ○ <u>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그 종류와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 면세대상에 영유아용품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면세대상 - <추가> <u>젓병, 젓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u>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제27조) ○ 수입하는 미가공식료품, 도서, 신문 및 잡지, 과학용·교육용·문화용 재화 등 <u><신설></u>	☐ 면세대상에 영유아용품 추가 ○ (현행과 같음) ○ <u>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그 종류와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 황정아의원안 2024. 8. 5. 발의(의안번호 2570), 임광현의원안 2024. 9. 13. 발의(의안번호 4001)

□ 2건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육아용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임광현의원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그 종류와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려는 것이고,

황정아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면세되는 육아용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경우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음.

참고로, 보건복지부⁵⁾에 따르면 2021년 한 달 평균 양육비⁶⁾는 97만 6,000원(영아가구 91만 8천원, 유아가구 106만 7천원)으로 가구 평균 소득(505만 5,000원)의 약 19.3%를 양육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은 양육비 수준은 2018년 86만 9,000원에 비해 10만 7,000원이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 영유아 양육가구에 부담이 되고 있음.

5) 「2021년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12.

6) 이 때 양육비는 보육비, 교육비, 의류비, 실비,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

둘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⁷⁾은 잠정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감소했으며,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평균 1.59명)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잠정)
출생아 수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합계출산율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자료: 「2023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 다만,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육아용품은 제품별 가격 편차가 커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더라도 면세의 효과가 육아용품의 유통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이윤으로 흡수되어 면세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09년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이후 해당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귀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음⁸⁾.

7)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둘째,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이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⁹⁾ 및 자녀세액공제¹⁰⁾ 등의 세제 지원이 있어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고, 간접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아동·양육수당 지급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반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는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 이유로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8)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소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 p.19~25

9)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0)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